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3. 20.>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산업재해 예방시설	<p>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및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p> <p>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설비</p> <p>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설비와 그 장치 또는 설비의 통합운영 시스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2) 지능형 안전 경보장치 3) 통합관제 및 사고방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비 4)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p>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드론 2) 무인운반 협동로봇 <p>차. 공장 내 비상대피를 위한 슬라이딩도어 및 비접촉식 개폐장치</p> <p>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안 보호둑, 해안 보호둑을 보수·보강·증설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타. 추락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계(발판과 통로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포함한다) 및 트러스 등 구조물</p>

2. 화재예방 · 소방시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방자동차(「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제외한다)
3. 광산안전 시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비
4. 내진보강 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기존 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연결재로 접합·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비상대비 시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